

제 676 호  
1978. 9. 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자춘  
편집 : 문화공보관 김인동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출판발간실  
전화 75-6090

# 시보

## 차 례

### ○ 규 칙

- 제 1768 호 : 서울특별시소방관인사규칙 폐지규칙..... 3
- 제 1769 호 :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..... 3
- 제 1770 호 :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중개정규칙..... 4
- 제 1771 호 :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중개정규칙..... 4
- 제 1772 호 :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..... 5

### ○ 고 시

- 제 446 호 : 도시개발사업 ( 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 ) 지적승인 ..... 6
- 제 447 호 : 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계획인가 ..... 6
- 제 448 호 : 도시계획시설 ( 학교, 도로 ) 결정및변경지적승인 ..... 8
- 제 449 호 : 도시계획시설 ( 유원지 ) 결정및지적승인 ..... 9
- 제 450 호 : 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결정 ..... 10
- 제 451 호 :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및지적승인 ..... 10
- 제 452 호 :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 ..... 11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 <이면 계속>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453 호 :	노거수지정해제.....	12
제 454 호 :	도시계획사업 ( 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 ) 및시설(공원) 시행허가.....	12
제 455 호 :	1978 년도제 2 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고시	14
제 456 호 :	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결정및지적승인.....	14
제 457 호 :	도시계획시설 ( 여객자동차정류장 ) 결정및변경결정...	15
제 458 호 :	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결정.....	16
제 459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실시계획인가.....	16
제 460 호 :	도시계획시설 ( 학교 , 도로 ) 변경및결정.....	18

◎ 공 고

제 373 호 :	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및파기명령(처분)공고...	20
제 377 호 :	동청사이전공고.....	21
제 380 호 :	도시계획시설 ( 도로및하수도 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21
제 381 호 :	도시계획시설 ( 여객자동차정류장 ) 실시계획공람공고...	24
제 66 호 (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고 ) :	교육공무원공로퇴직 수당지급공고.....	25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소방관 인사규칙제지  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
1978년 9월 7일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768 호

서울특별시소방관인사규칙제지규칙

서울특별시 소방관인사규칙은 이를  
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  
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
1978년 9월 8일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769 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 "식행  
활개설계"를 "양정계"로 한다.

제 53 조 제 1 항중 "소방경정"을 "소  
방령"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 제 3  
호중 "바"목을 삭제하고, "사"  
및 "아"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 
다.

사. 서정색선에 관한 사항

아. 기타 검사 및 감찰업무에 관한  
사항

제 54 조 제 1 항중 "계장 및 실장은  
소방경정 또는 소방령"을 "계장 및  
실장은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"으  
로 하고, 동조 제 2 항 제 1 호중  
"마"목을 삭제하며 제 2 호중 "나"  
목 다음에 "다"목을 다음과 같이  
신설한다.

다. 소방용장구의 유지관리

제 54 조의 2 제 1 항중 "소방경정"을  
"소방령"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  
제 3 호중 "마"목을 삭제하고  
"바"목 다음에 "사" 및 "아"  
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방염처리지의 지정

아. 소방설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보안업무시행세칙중 개정  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㉔

1978년 9월 8일

○서울특별시규칙제 1770 호

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  
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다  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1 항중 "방호담당관"을 삭제하  
고, "부청장"을 "총무국장, 민방위  
국장"으로 한다.

제 3 조 2 항중 "부청장과 보안담당관"  
을 "총무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 
다.

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직제중 개정규  
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㉔

1978년 9월 8일

○서울특별시규칙제 1771 호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  
직제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직제중 다음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하부조직 및 분장사무)

① 지도소에 총무계, 훈련계, 작물  
계, 소득작무계, 지도계와 생활개선  
계를 두고, 지장은 농촌지도사 또  
는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하며 생활  
개선계장은 생활지도사로 보한다.

② 지도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 
각호와 같다.

1. 총 무 계

가. 농촌지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 
수립 및 조정

나. 문서, 편인, 기밀, 인사, 부무  
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

다.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

라. 당직 및 청중단속에 관한  
사항

마. 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  
지 아니하는 사항

2. 훈 련 계

가. 영농기술훈련에 관한 사항

나. 농기계 집중관리 운영

다. 농기계 조작훈련

라. 새마을 영농기술자 육성

3. 작 물 계

가. 담작 및 전작 기술지도에

관한 사항

<p>나. 작품보호 및 트양비로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농업기술지역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4. 소독작목제</p> <p>가. 축산 및 원예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경제작물 및 특용작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</p> <p>라. 영농회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5. 지도제</p> <p>가.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농촌부업단지 지도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새마을사업</p> <p>라. 농촌청소년 조직 및 운영</p> <p>마. 농촌청소년 과제 및 교육행사 지도</p> <p>6. 생활개선제</p> <p>가. 농촌(외·주생활) 환경개선지도</p> <p>나. 영양개선사업</p> <p>다. 농번기 탁아소 설치운영</p> <p>라. 새마을부녀회 육성</p> <p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</p>	<p>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강 구 자 춘 ㉠</p> <p>1978년 9월 8일</p> <p>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772 호</p> <p>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</p> <p>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2 조 제 1 항중 "소방경감"을 "소방경"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 제 1 항중 "소방경감"을 "소방경"으로 "소방경위"를 "소방위"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 부 터 적용한다.</p>
---	--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446 호

도시 계획사업 (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20 호 ( 78.8.22 ) 로 결정된 도시 계획사업 ( 일단

가. 도시 계획시설 지적승인 내역

구 분	위 치	면 적	비 고
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	동대문구 목동 121-10 의 13필지	26,400 ( 7,993평 )	

의 주택지 조성사업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9. 2.

서울특별시 장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447 호

도시 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 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12 호 ( 78.3.21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며 동 공고 제 105 호 ( 78.4.15 ) 로 도시 계획사업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

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과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년 9월 2일

서울특별시 장

<p>1. 사업시행지 : 강남구서초동산 52-7 일대</p> <p>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인가</p> <p>3. 사업의규모 : 폭= 15미터 연장= 535미터</p> <p>4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장 (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장)</p>	<p>5.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. 착수년월일 : 인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. 준공예정일 : 1978.10.30</p> <p>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단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)</p>
---	--

토 지 조 서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1	강남구서초동 산 46-3	임야	424	중구을지로 2 가 193	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			
	산 47		300	"				
	산 51-1		335	"				
	산 51-2		30	"				
	산 49		295	전주시정원동 2 가 40-37		김종진		
3	산 50-1	"	42	관악노량재 202-1	이학구			미등기
4	산 50-2	"	145	관악방배 1 가 구회궁	김복래	서대문구불광 381-171	최창환	근저당권자
5	산 52-8	"	30	전북이리채인동 1 가 259-13	한수기	남대문 2 가 10-1	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	" 지상권결정
6	산 52-7	"	29	강남구포이동 6	김중호			
7	산 52-8	"	3	강남구대치동 87-5 중구순화동 62-5	이귀남 고성교			
8	384-8	전	1	용산이촌동 300-25	김영배			
9	384-4	"	24	성동성수 1 가 456-125	고치상			

번호	지 번	지 북	지 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10	384-6	전	4	관악동작동 307	박신덕			
11	389-1	#	90	반포아파트 84 동 40	김삼성			
				중구신당동 347-184	김천규			
				관악방배 165	서우석			
				성동금호 1 가 180	박봉순			
12	390	#	82	강남서초 250-1		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8 호

도시계획시설 ( 학교, 도로 )  
결정및변경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3 호 ( 78. 8.23 )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 학교, 도로 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규정에

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  
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9.2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국민학교 ( 신우이국민학교 )	도봉구쌍문동 422-2 일대	13,593 ( 4,112명 )	

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지적승인 조서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 변경	소로	3	6	130	쌍문동 424-7	쌍문동 422-2	폐 지
기정 변경	소로	3	6	60	쌍문동 422-5	쌍문동 422-5	폐 지
신설	소로		6	130	쌍문동 424-2	쌍문동 422-1	
기정	소로	3	6	140	쌍문동 424-4	쌍문동 422-2	
변경	중로	3	12	140	쌍문동 424-4	쌍문동 422-2	특별화장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9 호

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 
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 
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 
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  
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( '77.3.

16 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 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 
및 이의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9.4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결정

구분	시설명칭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친호유원지	강남구 둔촌동 81-1 의 14 필지	25,616 평	

\* 별첨 도면 생략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45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( '77.3.16 )규정에 의거</p>	<p>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8.9.4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조서

구분	시장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성내시장	강남구성내동 25-1, -2, -3	2,390 ㎡	지하 1 층 지상 2 층

\* 별첨 도면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451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및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같은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( '77.3.16 )규정에</p>	<p>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경기도 고양군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8.9.4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 및 지적승인조사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거정	대 학 교 (동덕여자대학)	성북구하월곡동산 86-66 일대	43,483 (13,140명)	
변경	"	성북구하월곡동 86-12 일대	43,857 (13,266명)	126명 추 가
신설	국 민 학 교	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394 일대	16,529 (5,900명)	
"	중 학 교	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393 일대	21,114 (6,387명)	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52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 
지 적 승 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8 호(78.8.25)로 결정 및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

취임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9.4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중로	2	96	15	1,300	돈암동 538-24	돈암동 538-2	
변경	"	2	96	15	1,300	"	"	위치변경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㉠ 서울특별시고시제 453 호

노거수 지정해제

산림 제 3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목을 노거수 지정해제 하였기  
기불 고시한다.

1978.9.4

서울특별시장

1. 지정구분및번호 : 노거수 제 105 호
  2. 소재지 : 서대문구용암동 101-6
  3. 소유 : 사유
  4. 해제사유 : 자연고사
  5. 해제년월일 : 1978.9.4
- 해제기관 : 서울특별시

㉡ 서울특별시고시제 454 호

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및 시설 (공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1 호 ( 78.8.22 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1 호 ( 78.8.26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 및 시설 (공원)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<p>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가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8.9.4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울 특 별 시 장</p> <p>1. 사업의 시행지 : 강서구화곡동산 47-1의 6필지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및 시설(공원)</p> <p>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총 33,230㎡ (10,052명) 중</p>		<p>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면적 : 18,095㎡ (5,474명)</p> <p>단지내 공원면적 : 15,135㎡ (4,578명)</p> <p>4. 사업의 시행자 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-23 신성건설(주)</p> <p>대표 : 정 운 용</p> <p>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가. 착공 : 허가 시행일로부터 7일 까지</p> <p>나. 준공 : 78.12.31</p> <p>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권리명세</p>					
소	제	지	지	지	소	소	비
		지	목	적	유	유	고
강서구화곡동	47-1	임		2,878㎡	종로구관철동 10-23	신성건설(주)	
"	"	47-11	"	1,673"	"	"	"
"	"	47-12	"	2,978"	"	"	"
"	"	47-13	"	4,617"	"	"	"
"	"	47-14	"	4,115"	"	"	"
"	"	47-15	"	16,863"	"	"	"
"	"	29-212	대	106"	"	"	"
계				33,230"	(10,052명)		
<p>7. 허가내용 : 별첨 허가도서(생략).</p>							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455 호

1978 년도제 2 회서울특별시  
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 년도  
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 
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  
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 
한다.

○ 일반회계 : 314,583,000 천원

1978.9.4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456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88 호(78.8.3)  
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 
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 
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 
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(77.3.16)  
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 
고시한다.

2. 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 
계획과와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  
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 
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낸  
다.

1978.9.6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지적승인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 점	중 점	비 고
신설	소로	1		10 <sup>m</sup>	120 <sup>m</sup>	용암동 331-61 (용암331-21)	용암 293-10	
신설	"	3		6	80	용암 317 (용암 601-68)	용암 315-15 (용암 601-42)	
신설	"			6	700	구파발 111-2	구파발 28-2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457 호

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결정 및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77.3.16)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지한다.

○ 시설결정조서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 . .

서울특별시장

○ 결정조서

- 별첨: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여객자동차정류장	도봉구상계동 110-8	420 평 (1,400㎡)	홍안운수
"	"	도봉구우이동 8-10	583 평 (1,924㎡)	삼화교통
"	"	관악구사당동 577-4 외 13필지	809.6 평 (2,671.7㎡)	동원여객
"	"	영등포구가리봉동산 12-5 외 4필지	1,097 평 (3,620㎡)	보안운수
"	"	동대문구면목동 1049-56 외 15필지	624.10 평 (2,059.6㎡)	혁상운수
"	"	성북구정릉동 818 외 2필지	446 평 (1,472㎡)	내진운수
거정	"	성북구정릉동 820-18 외 2필지	509 평 (1,680㎡)	동양교통
변경	"	성북구정릉동 820-18 외 4필지	1,039 평 (3,429㎡)	동양교통 (530평확장)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58 호  
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(77.3.16)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1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도시계획 확인원은 시민봉사실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란다.

1978.9.8  
 서울특별시장

○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시 장	호텔신라아케이트	중구장충동 2가 202	1,580㎡ (474명)	지하 1층

별첨 도면 생략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59 호  
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66호(77.5.30)로 변경 결정된 학교 용지에 도시계획사업(학교)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건설부고시 제 41호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관계

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9.8  
 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94-3의 10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, 서울난우국민학교(용지확장)

다. 시행면적및규모 : 1,841(557명)

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마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소유 권이 외의 권리명세: 별첨	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 소, 성명: 별첨 아. 위치 및 평면도: 별첨 (생략)
토 지 조 서	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소유권이외 권리
관악구 신림동	594-3	대	717㎡(217 평)	신림동 599 이상운	
	-25	"	132㎡( 40 평)	서울특별시	
	-26	"	188㎡( 57 평)	"	
	-28	"	119㎡( 36 평)	"	
	-30	"	174㎡( 52.7 평)	"	
	593-1	"	218㎡( 66 평)	"	
	883-2	도	87㎡( 26.3 평)	"	
	산 200-2	임	106㎡( 32 평)	"	
	-3	"	60㎡( 18 평)	신림동 593 유태열	
	-6	"	17㎡( 5 평)	서울특별시	
산 197-9	"	23㎡( 7 평)	신림동 597 이선우		

건 물 조 서

소재지	지 번	건 명	구 조	소 유 자	비 고
관악구 신림동	594-3	12.18 평	목조세면외집 7.69 평 세면부목조, 세면외집 4.49 평	신림동 597 이선우	
	"	17 평	목조초집	신림동 594-3 이석우	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460 호

도시계획시설 ( 학교, 도로 )  
변경및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학교, 도로 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 '77.3.16 )

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9. 8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국 민 학 교 ( 옥 정 국 교 )	성동구 옥수동 233-16 일대	15,008 ( 4,540 명 )	기존학교
'	국 민 학 교 ( 금 호 국 교 )	성동구금호동 2 가 511 일대	15,557 ( 4,706 명 )	'
'	중 학 교 ( 성수여자중교 )	성동구성수동 2 가 333-17 일대	9,293 ( 2,811 명 )	'
'	국 민 학 교 ( 금 북 국 교 )	성동구금호동 1 가 130-9 일대	10,265 ( 3,105 명 )	'
'	국 민 학 교 ( 경 동 국 교 )	성동구성수동 1 가 19-1 일대	21,712 ( 6,568 명 )	'
'	국 민 학 교 ( 무 학 국민 학교 )	성동구하왕십리동 950-1 일대	16,281 ( 4,925 명 )	'
'	국 민 학 교 ( 동 명 국민 학교 )	성동구 마장동 556 일대	21,537 ( 6,515 명 )	'

구분	시	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국	민 학 교	성동구자양동화양추가지구 120구획일대	13,322 (4,030 평 )	
기정	중 고 등 학 교 (미림여자중고교)	관악구신림동 산 66-1 외 5 필지		35,683 (10,794 평 )	
변경			관악구신림동 산 66-1 외 7 필지	35,928 (10,868 평 )	74평 증 가
기정	고 등 학 교	영등포구구로동 164 일대		30,720 (9,293 평 )	
변경			영등포구구로동 164 외 20 필지	24,833 (7,512 평 )	1,781평 축 소
기정	국	민 학 교	영등포구구로동 166 일대	13,230 (4,002 평 )	
변경			영등포구구로동 166-5 외 11 필지	11,111 (3,361 평 )	641평 축 소
신설	국	민 학 교	영등포구여씨도동 1-890	10,413 (3,150 평 )	
기정	국	민 학 교 (발산국민학교)	강서구내발산동 412 일대	27,000 (8,168 평 )	
변경				20,760 (6,280 평 )	1,888평 축소(도로개 설하기위함)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	

나. 도로결정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고
기정 변경	소로	3	6m	100m	성동구마장동 556	성동구마장동 556	폐지
기정 변경	소로	4	4	60	성동구마장동 557-1	성동구마장동 557-1	폐지
기정 변경	소로	3	6	110	성동구자양동 120 구획	성동구자양동 120 구획	폐지
기정 변경	소로	3	6	100	영등포구구로동 166-5	영등포구구로동 176	폐지
신설	중로	3	12	225	강서구내발산동 436-2	강서구내발산동 407-2	폐지 교로 진입로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373 호

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 및  
파기명령 (처분) 공고

공산물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의

1. 처분대상 상품

업체명	소재지	상 품	불합격 항목
미성공업사	영등포구당산동 5가 34	보행기 (사각) 유모차 (마키하우스)	보호틀내측과 수직면과의 관계 다리가뺨이의 벨트 폭

2. 처분내용: 수거 및 파기명령 (처분)

3. 수거 및 파기기간: 78.9.2 - 78.10.2 (1개월간)

4. 처분사유: 공산물 품질검사 기준미달

규정에 비거 품질검사 결과 불합  
격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 
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 (처분) 하였  
기 동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항에 준  
하여 이를 공고함.

1978. 9. 2.

서울특별시장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77 호

농 청 사 이 전 공 고

다음과 같이 농청사를 신축이전하였기 공고함.  
다 음

등 명	이 전 내 용		이전일자	비고
	이 전 전	이 전 후		
도봉구청제 2 농	도봉구청동 581 처 28	도봉구청동 578 처 3	78.9.1	

1978. 9. 1.

서 울 특 별 시 장 구 자 출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80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및하수도)  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2493 호 ( 76 년 6 월 21 일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불광시장주변 하수도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34 조의 규정에

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서공람에 공고하고자 이에 공고함.  
2. 토지 및 건물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 
3. 관련도시는 은평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.

1978. 9.

서 울 특 별 시 장

토지소유자명부 ( 사유지 )

순 번	토지번호		지 목	저 촉 평 수		소 유 자		비 고		
	등명	지번		면적	평수	주 소	성 명	분할토지	토번	기타사항
1	대조동	11-13	대지	28.4	8.6	대조동 11-11	이영숙		11-5	
2	"	11-14	"	1	0.3	"	"		11-12	
3	"	11-15	"	5	1.5	"	"		11-11	
4	"	12-34	"	3	0.9	" 12-28	이기봉		12-28	주민은행 군지

순 번	토지비소재		지 목	저축평수		소 유 자		비 고	
	동 명	지 번		㎡	평	주 소	성 명	분할토지	기타사항
5	대조동	11-2	대지	4	1.2	대조동 11-11	이 설 숙		
6	"	12-35	"	1	0.3	" 74-123 " 12-29	양기향	12-29	
7	"	12-36	"	1	0.3	" 9-14	민옥동	12-31	
8	"	12-37	"	50	15.15	성동구성수동 2가 300-42	박금순	12-20	
9	"	12-38	"	131	39.7	대조동 12-25	김동진	12-10	
10	"	12-39	"	75	22.7	"	"	12-15	
11	"	12-40	"	77	23.3	대조동 12-19	김찬택	12-19	
12	"	12-41	"	9	2.72	" 12-2	김관기	12-2	국민은행 신관지
13	"	12-42	"	57	17.27	경기용인기흥신갈 35	신연제	12-17	국민은행 신관지
14	"	12-43	"	11	3.33	대조동 14-13	김정현	12-6	국민은행 신관지
15	"	12-44	"	19	5.75	"	"	12-26	
16	"	14-324	"	26	7.87	종로구세동 140~5	이환외 합인	14-1	) 공유지분
17	"	14-325	"	96	29	"	"	14-1	
18	"	14-326	"	144	43.03	대조동 12-25	한수찬	14-21	
19	"	14-327	"	46	13.93	" 14-32	박영진	14-22	
20	"	14-328	"	55	16.66	" 33-10	강봉균	14-23	
21	"	14-329	"	1	0.1	" 14-14	불대상가 추석회사	14-274	
22	"	14-330	"	1	0.3	"	"	14-275	
23	"	14-331	"	2	0.6	"	"	14-289	
24	"	14-332	"		0.9	대조동 74-40	박재린	14-40	국민은행 신관지
25	"	14-334	"	58	17.57	" 14-137	이주현	14-137	
26	"	14-335	"	79	23.93	" 14-62	한창원	14-62	
27	"	14-336	"	78	23.63	" 14-63	신도순	14-63	
28	"	14-337	"	84	25.45	" 14-64	김봉예	14-64	
29	"	14-338	"	110	33.33	" 14-65	이찬순	14-65	국민은행 신관지
30	"	13-2	"		21	신농동 60-99	이찬순 의외		국민은행 신관지

순 번	토지외소재		지 목	적용면적수		소유자		비고	
	동명	지번		㎡	평	주소	성명	불합 토지	기타사항
31	대조동	13-1	대지		148	대조동 13-1	최임순		
32	"	12-16	"		29	" 12-11	서남선 외 4인		
33	"	24-1	하천		24	죽번동 27	문도치		
34	"	25-15	대지	4	1.2	대조동 25-13	최준성		
35	"	25-16	"	18	5.25	" 169-2 " 25-8	최일봉 최성훈		
36	"	26-29	도로	27	8.18		서울특별시		
37	"	26-31	"	19	5.75		"		
38	"	14-333	대지		6.35	대조동 14-5	곽노숙	14-5	
계	38 필			629.05 평					

토지소유자명부 (국유지)

순 번	토지외소재		지 목	적용면적수		소유자		비고	
	동명	지번		㎡	평	주소	성명	불합 토지	기타사항
1	대조동	11-9	도로		10		서울시장		
2	"	13-3	"		1		"		
3	"	13-4	"		27		"		
4	"	13-8	하천		43		"		
5	"	14-48	도로		57		"		
6	"	14-35	잡지		8		"		
7	"	13-11	대지		2		"		
8	"	15-181	"		2		"		
9	"	15-182	지	적 부			"		
10	"	14-44	하천		52		"		
11	"	14-34	"		35		"		
12	"	23-3	임야		19		"		
13	"	23-9	하천		32		"		
14	"	24-3	"		136		"		
15	"	24-2	"		1		"		
계	15 필			425					

㉠ 서울특별시 공고 제 381 호
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 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5 호 (78.7.18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9 호 (78.8.21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김포교통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하여,
2. 공사구간내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할 수 없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
3.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4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

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9.9

서울특별시

공 랫 개 용

1. 사업장의 위치 :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7-4의 2 필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여객자동차 정류장) 김포교통 신설
3. 사업의 규모 (면적) : 2,238㎡ (677평)
4. 사업의 시행자 : 김포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기 만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 
가. 착수에정일 : 78.  
나. 준공예정일 :
6. 사봉 또는 수봉할 토지 (별첨 토지조서) 들

토 지 조 서

토지의 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비 고
강서구 가양동	54-8	대	1,603㎡	강서구 방화동 568의 4 김포교통(주)	
	57-4	잡	403 "	마포구 성산동 228-9 김태림	
	57-6	잡	232 "	"	
계			2,238 #		



<p>◎ 서울교위공고제 66 호</p> <p>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</p> <p>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</p> <p>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>1. 수당지급 대상자</p> <p>공립 초, 중등 교원으로서 지급 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연 령</p> <p>1) 60세 이상</p> <p>2)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</p> <p>나. 경력 (교육경력, 교육연구경력, 교육행정경력 통산)</p> <p>1) 30년 이상</p> <p>2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</p> <p>가)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</p> <p>나) 재직중 각급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</p> <p>다) 재직중 시, 도 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</p>	<p>장을 받은 자</p> <p>2. 수당지급일 : 1978년 11월 30일</p> <p>3. 신청기간 : 1978.10.11 ~ 10.20 (10일간)</p> <p>4. 신청절차</p> <p>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추성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</p> <p>5. 지급액</p> <p>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</p> <p>6. 지급절차</p> <p>가. 대상자결정 통지</p> <p>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 장에게 통지한다.</p> <p>나. 수당지급장소</p> <p>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</p> <p>7. 기타사항</p> <p>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.</p> <p>1978.9.9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</p>
---	--